

## 1. 개정이유

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」를 기시행('15.4.1 제정)함에 따라 규정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「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」을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」(국토해양부기타, 2013.1.9.)을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기타 제 953 호

##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안

「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」(국토해양부기타, 2013.1.9.)을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